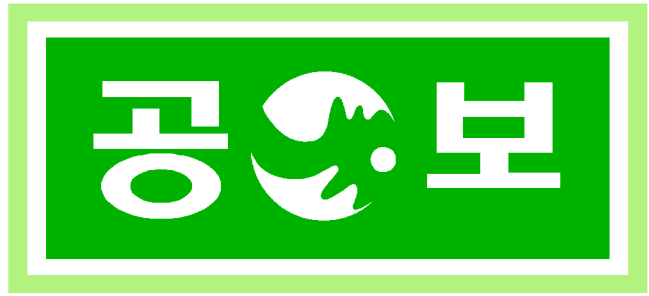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기<br>관<br>의<br>장 | 기 관 의 장 |
|                  |         |



제 960 호 2015. 8. 3. (월)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38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41호[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 · 고시]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42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43호[도로명주소 고시] ..... 6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700호[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704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안] ..... 10

|        |  |
|--------|--|
| 안<br>내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br>☞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 138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도시공사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유통로 16 (울산진장디플렉스 1층)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영농을 위한 진입로 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진장동 134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9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5. 7. 28. ~ 2016. 6. 3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2015-141호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즉시
2. 고시내용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규정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3. 기타사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축주택과[전화 (052-241-8013 ~ 8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142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13(정자동)외 1건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 사유 |
|--------|-----------|-------|
| (별지참조)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8. 3.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연번 | 도로명주소                  | 증전주소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폐지사유   | 비고 |
|----|------------------------|---------------------|--------------|--------|----|
| 1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13(정자동)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312-7  | 2015-08-03   | 건축물 멸실 |    |
| 2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29(호계동)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77-21 | 2015-08-03   | 건축물 멸실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5 - 143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134-1(무룡동)외 20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지참조)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8.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순번 | 중점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과시일 | 도로명주소<br>과시일 | 도로명주소<br>과시일                      | 도로명<br>과시일 | 비고                          |
|----|----------------------------------|--------------------------|--------------|--------------|-----------------------------------|------------|-----------------------------|
| 1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94-6, 산94-7, 산94-3 | 울산광역시 북구 당곡1길 134-1(무룡동) | 2015-08-03   | 2015-08-03   | 예전지명인달곡명칭을사용해서도로명부여하였다.           | 2004-08-09 |                             |
| 2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1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455(연암동)    | 2015-08-03   | 2015-08-03   |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9-08-20 |                             |
| 3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96-2, 590-1        |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2길 5-1(매곡동)   | 2015-08-03   | 2015-08-03   | 기존자연마을인신기마을에위치를지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 4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96-6, 590-9        |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2길 5-3(매곡동)   | 2015-08-03   | 2015-08-03   | 기존자연마을인신기마을에위치를지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 5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96-7, 590-10       |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2길 5-5(매곡동)   | 2015-08-03   | 2015-08-03   | 기존자연마을인신기마을에위치를지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 6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96-8, 590-11       |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2길 5-7(매곡동)   | 2015-08-03   | 2015-08-03   | 기존자연마을인신기마을에위치를지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 7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312-6, 312-7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13(정자동)   | 2015-08-03   | 2015-08-03   |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9-08-20 |                             |
| 8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88-2L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9길 6(진장동)    | 2015-08-03   | 2015-08-03   |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12-27 |                             |
| 9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13-1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9길 34(연암동)  | 2015-08-03   | 2015-08-03   | 이지역의옛지명이므로현재도두부곡마을이존재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1-05 |                             |
| 10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760-5               | 울산광역시 북구 동남로 563(대안동)    | 2015-08-03   | 2015-08-03   | 동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로서 동남로로 부여       | 2011-02-11 |                             |
| 11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5-8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5길 9(중산동)     | 2015-08-03   | 2015-08-03   |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지번정정(중산지구)<br>589L→1285-8   |
| 12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7-8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3길 23(중산동)    | 2015-08-03   | 2015-08-03   |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지번정정(중산지구)<br>1038L→1287-8  |
| 13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7-9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3길 21(중산동)    | 2015-08-03   | 2015-08-03   |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지번정정(중산지구)<br>1039L→1287-9  |
| 14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9-3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5길 19-6(중산동)  | 2015-08-03   | 2015-08-03   |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지번정정(중산지구)<br>1483L→1279-3  |
| 15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2-1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서로 30(중산동)    | 2015-08-03   | 2015-08-03   | 중산지구서쪽머릿지인호로라는의미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지번정정(중산지구)<br>381L→1282-1   |
| 16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0-2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5길 19-7(중산동)  | 2015-08-03   | 2015-08-03   |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지번정정(중산지구)<br>1382L→1280-2  |
| 17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8-12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4길 10(중산동)    | 2015-08-03   | 2015-08-03   |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지번정정(중산지구)<br>9812L→1288-12 |
| 18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8-6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2길 23(중산동)    | 2015-08-03   | 2015-08-03   | 법정동명칭사용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13-12-30 | 지번정정(중산지구)<br>9861L→1288-6  |
| 19 | 울산광역시 북구 산전동 326-5               | 울산광역시 북구 계내1길 7-10(산전동)  | 2015-08-03   | 2015-08-03   | 기존자연마을인계내마을에위치를지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09 |                             |
| 20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77-36, 936-298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5길 31(호계동)    | 2015-08-03   | 2015-08-03   | 호계시장이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 2009-08-20 |                             |
| 21 | 울산광역시 북구 상인동 371-15              | 울산광역시 북구 신남로 68(상인동)     | 2015-08-03   | 2015-08-03   | 기존지방인담에위치하여도로명부여하였다.              | 2008-03-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700호

##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재등록 공인 내역


| 연번 | 공인명              | 등록사유                 | 등록일자<br>(사용개시일) | 인영  | 비고 |
|----|------------------|----------------------|-----------------|---|----|
| 1  | 울산광역시북구<br>효문동장인 | 기존 공인의 마멸에<br>따른 재등록 | 2015. 8. 3.     |  |    |

### 2. 폐기 공인 내역


| 연번 | 공인명              | 폐기사유 | 폐기일자        | 인영  | 비고 |
|----|------------------|------|-------------|---|----|
| 1  | 울산광역시북구<br>효문동장인 | 마멸   | 2015. 8. 3. |  |    |



## 3.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내역

| 연번 | 공인명              | 등록사유                                      | 등록일자<br>(사용개시일) | 인영  | 비고 |
|----|------------------|---|-----------------|---|----|
| 1  | 울산광역시북구<br>효문동장인 | 기존 공인의 마멸로<br>재등록함에 따라 전자<br>결재시스템 공인 재등록 | 2015. 8. 3.     |  |    |

## 4.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내역

| 연번 | 공인명              | 폐기사유                | 폐기일자        | 인영   | 비고 |
|----|------------------|---------------------|-------------|--|----|
| 1  | 울산광역시북구<br>효문동장인 | 기존 공인 마멸에<br>따른 재등록 | 2015. 8. 3. |  |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5-704호

###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안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도로관련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을 단순 제기재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 적용
  - 점용료 산정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항은 삭제
  - 점용료의 조정·감면
  - 점용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
  - 변상금의 징수

#### 3. 근거법규

- 도로법 제66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69조·제71조·제10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월 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61,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개정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3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르되, 점용료의 부과 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점용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